|  |
| --- |
| 문제에서 서술하라고 요구한 경우 문장의 형태로 답하여야 하며, 답안양식을 제시한 경우 답안양식을 준수하여 답하여야 합니다. 또한 답의 개수를 제한한 경우 처음부터 해당 개수까지만 채점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 1】(12점)**

감사는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회사의 정보이용자들이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만약 감사받은 후 회사가 재무적 곤란에 처하게 되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감사보고서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물음 1)** 신문기자인 친구가 공인회계사인 당신에게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왜 도산하는가?”를 질문해 왔다. 공인회계사로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술하시오.

**(물음 2)** 생명과학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A㈜는 20x1년 중에 주식을 상장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A㈜는 생명과학업종의 특성상 현재보다는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향후 3년 간의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X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하였다. X회계법인은 A㈜의 향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높은 수준의 확신, 적극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X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아래 주장에서 고르고 그 근거를 **[답안양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 주 장 >**

**주장 ①:** 추정재무제표는 어떤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확신, 즉 감사의견을 제공할 수 없다.

**주장 ②:** 추정재무제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면 높은 수준의 확신, 즉 감사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답안양식]**

|  |  |
| --- | --- |
| 맞는 주장  (다음 중 선택) | 근 거 |
| (주장 ①) |  |
| (주장 ②) |  |

**※ 다음은 (물음 3)과 (물음 4)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

|  |
| --- |
| B㈜의 20x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Y회계법인은 20x2년 2월 25일자로 감사보고서를 B㈜에 제출하였다. Y회계법인은 20x2년 7월 2일에 20x2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던 중 20x1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20x1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였고, 감사인은 20x2년 7월 28일자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였다.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과정에서 Y회계법인은 내부적으로 업무수행이사(engagement partner), 현장책임회계사(in-charge CPA) 그리고 2년차 계정담당회계사(staff)와 해당 문제를 협의하였다. 다음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 중 일부이다.  **계정담당회계사**: 회사의 재무제표가 명백하게 왜곡표시된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것은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 회사가 자발적 리콜(recall)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회사가 |

|  |
| --- |
|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언론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회사의 용기있는 행동을 존중하기 보다는 해당 자동차의 품질을 문제 삼는 비판적 기사만 전파하여, 자동차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굳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해야 할까요?  **현장책임회계사**: 저도 계정담당회계사가 우려하는 바에 동의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면, 언론에서는 “감사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다”는 비판적 기사로 마치 감사인이 과거에 묵인했던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이제와서 자백한 것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할 경우 혹여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업무수행이사**: 20x1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때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는데도 이번에 문제가 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현장책임회계사**: 네!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내부 품질관리부서에서도 다시 감사조서를 검토하였는데, 당시의 감사절차는 회계감사기준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이사**: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해당 왜곡표시가 왜 발견되지 않았던 것인가요?  **현장책임회계사**: 회사의 경영진이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위조하고 감사인에게 은폐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해당 재무제표 왜곡표시는 내부 직원이 검찰에 익명으로 사실을 제보하고 검찰조사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진이 자백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업무수행이사**: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했을 경우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다는 평을 얻어 해당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 |

|  |
| --- |
| 이미지가 높아진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감사보고서 재발행은 회계감사기준에 명시된 것입니다. 회계법인으로서는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회계감사기준에도 맞는 절차라고 판단합니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다고 하니, 우리도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합시다. |

**(물음 3)** 위에서 제시한 자료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것이 감사인에게 추가적으로 혹여 일어날 수도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가중하게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아래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선택하고 **[답안양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 주 장 >**

**주장 ①:** 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더라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중된다.

**주장 ②:**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면 오히려 재무제표의 왜곡으로 인한 정보이용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 향후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된다.

**[답안양식]**

|  |  |
| --- | --- |
| 맞는 주장  (다음 중 선택) | 근 거 |
| (주장 ①)  (주장 ②) |  |

**(물음 4)** 위에서 제시한 자료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최초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였다고 감사인을 비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서술하시오.

**【문제 2】(6점)**

다음의 각 상황에 대하여 감사인의 외부감사업무 수임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답안양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  |
| --- |
| **(상황 1)** X회계법인은 A㈜와 주식매수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상인 B㈜의 주식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X회계법인은 A㈜로부터 외부감사업무를 의뢰받았다.  **(상황 2)** Y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engagement partner)인 정 회계사는 C㈜의 신임 대표이사인 박 사장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둘도 없는 친구이다. 최근에 Y회계법인은 C㈜로부터 외부감사업무를 의뢰받았다.  **(상황 3)** Z회계법인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D㈜와 제휴하여 모바일 회계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ㆍ판매하고 있다. 모바일 회계교육프로그램 매출이 Z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D㈜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최근에 Z회계법인은 D㈜로부터 외부감사업무를 의뢰받았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상황 | 감사가능 여부  (O 또는 X) | 판단 이유 |
| (1) |  |  |
| (2) |  |  |
| (3) |  |  |

**【문제 3】(7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ㆍ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물음 1)**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적용대상)를 제시하시오.

**(물음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ㆍ운영과 관련하여 회사의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자, 감사(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 또는 책임을 **[답안양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구분 | 주요 역할 또는 책임 |
| (예시)  경영진 | (예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
| ①내부회계관리자 |  |
| ②감사  (감사위원회) |  |

**(물음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내부통제 평가는 그 업무범위와 성격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문제 4】(16점)**

감사는 기본적으로 표본감사를 전제로 하며, 표본감사는 크게 통계적 표본감사와 비통계적 표본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 다음은 (물음 1)과 (물음 2)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

|  |
| --- |
| (1) 표본위험이란 표본에 근거한 감사인의 결론이 모집단 전체에 동일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을 경우 도달하였을 결론과 다를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2) 표본위험은 제1종오류(α위험)와 제2종오류(β위험)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물음 1)** 세부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표본위험을 설명하고, 이들 감사위험이 감사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물음 2)** 제1종오류(α위험)와 제2종오류(β위험) 중 감사인이 보다 통제하려는 표본위험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물음 3)** 김 회계사는 A㈜의 20x1년 감사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김 회계사가 A㈜의 매출 및 대금청구활동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내역**이다.

|  |
| --- |
| 김 회계사는 통계적 표본감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①속성표본감사방법을 적용하였다. 김 회계사는 A㈜의 매출송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담당부장의 검토와 승인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관심속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적절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②매출송장의 금액이 중요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이탈사항으로 정의하였다.    김 회계사는 20x1년초부터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는 시점까지 발행된 ③모든 매출송장(6,000장)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표본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표본감사의 신뢰수준을 90%, ④모집단의 예상이탈률을 4%, 모집단 허용이탈률을 8%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결정된 표본규모는 100개이다. 김 회계사는 A㈜의 매출송장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⑤임의추출법에 따라 1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김 회계사는 ⑥표본에 대해 질문과 문서검사를 수행한 결과, 5개의 표본에서 담당부장의 승인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2개의 표본에서는 담당부장의 승인이 있었으나 매출송장상의 수량이 적송서류(거래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김 회계사는 ⑦표본이탈률을 7%(=(5개+2개)/100개)로 계산하였다. 또한 표본이탈률에 ⑧표본위험 허용치를 가산하여 모집단 투영이탈률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수치는 모집단 허용이탈률을 초과하므로 김 회계사는 매출 및 대금청구활동의 통제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밑줄 친 ① ∼ ⑧의 내용 중에서 적절치 않은 내용이나 표현 **세 가지를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단, ① ∼ ⑧에 포함된 오류내용과 관계없이 다른 문장이나 표현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음 4)** 다음은 감사인이 세부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표본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다.

|  |
| --- |
| ① 감사인은 표본결과가 모집단의 실제 왜곡표시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  ② 감사인은 모집단에서 발견할 것으로 예상하는 왜곡표시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③ 감사인은 모집단항목들의 금액크기의 범위가 넓어 모집단을 계층화하였다.  ④ 감사인은 특정 모집단에 대한 적발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부테스트나 실증적인 분석적절차와 같은 다른 실증절차에 더 많이 의존하고자 한다. |

위 요소들이 표본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로 표기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요소 | 증가 또는 감소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은 (물음 5)와 (물음 6)에 관한 자료이다.**

박 회계사는 B㈜의 20x1년 감사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박 회계사는 20x1년말 현재 매출채권 장부금액의 실재성을 확인하고자 통계적인 표본감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박 회계사는 무작위추출법을 통해 25개 표본을 추출하고, 이들 거래처에 적극적 조회서를 발송하였다.

박 회계사가 발송한 25개 조회서는 모두 회신되었으나, 이중 4개의 표본은 장부금액(조회금액)과 회신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다음은 박 회계사가 금액차이를 검토한 내역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내역>   |  |  |  |  | | --- | --- | --- | --- | | 거래처 | 장부금액 | 회신금액 | 차이금액 | | ①갑㈜ | ￦5,000 | ￦0 | ￦5,000 | | ②을㈜ | 10,000 | 16,000 | (6,000) | | ③병㈜ | 15,000 | 0 | 15,000 | | ④정㈜ | 20,000 | 18,000 | 2,000 | | 합계 | ￦50,000 | ￦34,000 | ￦16,000 |   <차이금액의 검토결과>  ①갑㈜: 갑㈜는 조회기준일 전에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B㈜는 조회기준일 후에 이를 수령하였다.  ②을㈜: 변이(anomaly)로 판단되는 차이금액이며, B㈜ 경영진은 장부금액을 수정하였다.  ③병㈜: 변이로 판단되는 차이금액이며, B㈜ 경영진은 장부금액 수정을 거부하였다.  ④정㈜: 원인불명의 소액차이로서, B㈜의 경영진은 해당 장부금액을 수정하였다. |

**(물음 5)** 박 회계사가 표본에서 **발견한 왜곡표시금액**을 계산하시오(계산근거를 함께 제시하시오).

**(물음 6)** 감사인은 왜곡표시규모에 대한 개괄적 관점을 얻기 위해 왜곡표시를 모집단으로 투영하여야 한다. 위 차이금액에 대하여 모집단 투영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답안양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 |
| 거래처 | 차이금액 | 투영 여부  (O 또는 X) | 이유 |
| ①갑㈜ | ￦5,000 |  |  |
| ②을㈜ | (6,000) |  |  |
| ③병㈜ | 15,000 |  |  |
| ④정㈜ | 2,000 |  |  |

**【문제 5】(13점)**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결과와 실증절차 간에는 명확한 연관관계가 있다.

**(물음 1)**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구성하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물음 2)** 감사인은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실증절차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방법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답안양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영역 |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 입수 방법 |
| 실증절차의 성격 |  |
| 실증절차의 범위 |  |
| 실증절차의 시기 |  |

**(물음 3)** X회계법인은 A㈜와 20x1년부터 20x3년까지 3년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x1년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다. 감사팀은 A㈜의 20x2년도 영업환경, 재무성과 및 통제환경이 20x1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감사팀은 20x2회계연도(1.1. ∼ 12.31.) 감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을 수립하였다.

**<감사일정>**

|  |  |
| --- | --- |
| 날짜 | 업무 |
| 20x2년 5월 | **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감사팀 토의**: 20x1년 실제 감사절차를 바탕으로 20x2년 통제테스트 및 실증절차 계획을 사전적으로 수립 |
| 20x2년 9월 | **중간감사**: 통제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수립된 실증절차 계획을 수정 |
| 20x3년 2월 | **기말감사**: 실증절차 수행 |

**<자료 1>** 20x1년 감사조서 검토 결과

|  |
| --- |
| 감사팀의 김 회계사는 A㈜의 20x2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x1년 감사조서를 검토하고 아래의 사항을 발견하였다.  1) 매출채권 계정과 관련된 통제의 설계 및 운영은 효과적이었으며 세부테스트 결과 중요한 왜곡표시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기술 일반통제(general IT controls)는 모두 효과적이었다. |

**<자료 2>** 20x2년 감사를 위한 **사전** 실증절차 (preliminary substantive procedures) 계획

|  |
| --- |
| 20x1년 감사조서를 검토한 결과 김 회계사는 20x2년 매출채권 계정 감사에서도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제의 설계 및 운영은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20x1년 실증절차(이러한 절차는 20x1년도에는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가정)와 동일하게 20x2년 실증절차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1) **(총계정원장 대조)** 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매출채권 명세서 합계 금액과 총계정원장의 잔액을 대조한다.  2) **(분석적절차)** 매출채권에 대한 분석적절차를 수행한다. 분석적절차에는 당기와 전기 잔액의 |

|  |
| --- |
| 비교, 회전율 및 회수기간 분석, 대손충당금 비율 분석을 포함한다.  3) **(기간귀속)**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20x2년 12월 31일 최종 인도분과 20x3년 최초 인도분에 대하여 거래명세서의 날짜와 대조한다.  4) **(조회)** 매출채권명세서에서 1억원(매출채권 계정에 적용되는 중요성기준 2억원×50%)을 초과하는 거래처는 모두 조회서를 발송한다. 1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무작위 추출된 25개 거래처에 조회서를 발송한다. 조회기준일은 20x2년 9월 30일이다.  5) **(회수가능성)** 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연령분석표(aging schedule)의 합계와 매출채권명세서의 합계금액을 대조하고, 회사의 대손추계액 산정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회수불능인 매출채권 여부에 대한 회사 제시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0x2년 5월에 열린 감사계획 토의에서 상기의 실증절차는 업무수행이사가 승인하였다. |

**<자료 3>** 20x2년 중간감사결과

|  |
| --- |
| 20x2년 9월에 진행된 중간감사 결과 아래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1)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테스트 결과, 프로그램 변경이 승인 없이 이루어지고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 일반통제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2) 매출채권과 관련된 수작업통제 또한 업무분장 미비 및 부적절한 승인의 사례가 발견되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3) 상기 1), 2)의 결과를 고려하여 매출채권과 관련된 정보기술 응용통제에 대한 확대 테스트를 포기하고, 응용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

**[요구사항]**

**<자료 3>**의 중간감사결과를 고려하여 **<자료 2>**의 사전 실증절차 계획에서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을 기술하고 그 이유를 **[답안양식]**에 따라 설명하시오. 만약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변경불필요”라고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20x2년 실증절차 계획 |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실증절차 | 이유 |
| (예시)  1)총계정원장 대조 | (예시)  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된 계정명세서의 합계를 재계산한다. | (예시)  정보기술일반통제와 응용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된 계정명세서의 합계를 신뢰할 수 없다. |
| 2)분석적절차 |  |  |
| 3)기간귀속 |  |  |
| 4)조회 |  |  |
| 5)회수가능성 |  |  |

**【문제 6】(16점)**

지배회사 AtoZ㈜는 생명공학회사로서 바이오 제품을 주로 국내 및 신흥국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다. AtoZ㈜의 종속회사는 24개이며 **모두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 X회계법인은 20x2년도 부문감사에 대하여 사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AtoZ㈜의 20x1년도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다. 그룹재무제표는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연결기준이며 부문정보는 별도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억원) | | | | | | |
|  | | 그룹 재무제표 | 부문정보 | | | |
| A | B | C | D∼Z  (주1) |
| 재무상태표 주요항목(12월31일) | | | | | | |
|  | 현금 | 600 | 270 | 60 | 50 | 140 |
|  | 매출채권 | 3,500 | 1,000 | 400 | 200 | 800 |
|  | 재고자산 | 2,500 | 800 | 300 | 150 | 500 |
|  | 유형자산 | 1,200 | 360 | 120 | 60 | 290 |
|  | 선급비용 | 325 | 150 | 50 | 20 | 30 |
|  | 매입채무 | 3,400 | 1,020 | 350 | 170 | 1,200 |
|  | 미지급비용 | 800 | 300 | 100 | 50 | 100 |
|  |  |  |  |  |  |  |
| 손익계산서 주요항목 | | | | | | |
|  | 매출 | 48,000 | 14,000 | 5,000 | 2,400 | 16,000 |
|  | 매출원가 | 32,000 | 9,600 | 3,000 | 1,600 | 8,000 |
|  | 판매관리비 | 6,000 | 1,800 | 230 | 180 | 1,500 |
|  | 세전순이익 | 10,000 | 3,000 | 800 | 1,160 | 3,000 |

(주 1) D∼Z는 부문 D부터 부문 Z까지 21개 부문의 단순합산이다.

다음은 회계감사기준에 근거한 X회계법인의 내부감사매뉴얼의 일부이다.

**<내부감사매뉴얼>**

|  |
| --- |
| **1. 유의한 부문의 식별**  그룹재무제표 벤치마크(예, 그룹세전순이익, 그룹영업이익 등) 기준으로 15%를 초과하는 부문은 재무적 유의성을 가지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재무적으로 유의한 부문으로 식별한다. |

|  |
| --- |
| **(사례)**  - 그룹재무제표 벤치마크: 그룹세전순이익  - 그룹세전순이익: 1,000억원  - 부문X의 세전순이익: 160억원 (그룹세전순이익의 16%)  - 그룹재무제표 벤치마크의 15%를 초과하므로 부문 X를 재무적으로 유의한 부문으로 식별  **2.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의 감사절차**  부문정보 전체는 유의한 부문이 아니더라도 해당부문에 그룹재무제표의 수행중요성을 초과하는 계정이 있다면 해당 계정에 대하여는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김 회계사는 20x2년 AtoZ㈜의 그룹 및 그 종속회사의 부문재무제표가 20x1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김 회계사는 내부감사매뉴얼에 근거하여 20x2년도 그룹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성기준(planned materiality)을 500억원(20x1년 세전순이익의 5%) 으로, 수행중요성(performance materiality)을 250억원으로 설정하였다. 김 회계사는 해외부문이 모두 감사인의 신뢰도가 낮은 신흥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룹감사목적으로 그룹감사인의 관여 정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다음의 각 물음은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독립적인 상황이다.**

**(물음 1)** 아래 자료는 그룹감사목적으로 부문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유형을 결정(scoping)하기 위하여 김 회계사가 **파악한 사실** 및 **결론**을 문서화한 것이다.

**<자료>**

|  |
| --- |
| **(부문 A)**  **파악한 사실**: 부문 A의 세전순이익은 그룹세전순이익의 30%에 해당.  **결론**: 부문 A는 그룹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을 가지므로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하고 부문 |

|  |
| --- |
| 감사인에게 부문 A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함.  **(부문 B)**  **파악한 사실**: 부문 B의 세전순이익은 그룹세전순이익의 8%에 해당.  **결론**: 부문 B의 별도재무제표는 재무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그룹감사목적으로 부문감사인에게 별도의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부문 C)**  **파악한 사실**: 부문 C의 세전순이익은 그룹세전순이익의 11.6%에 해당됨. 20x2년 3월에 주식을 취득하여 그룹재무제표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그룹 공통의 시스템과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내부감사업무도 수행되지 않았음.  **결론**: 그룹세전순이익의 15% 미만이지만, 부문의 고유한 성격과 환경을 감안하여 부문 C를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하고 부문감사인에게 부문 C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요청함.  **(부문 D∼Z)**  **파악한 사실**: 부문 D∼Z의 세전순이익의 합계는 그룹세전순이익의 30%에 해당. 그러나 부문 D∼Z 어느 하나의 부문도 재무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결론**: 부문 D∼Z 21개 각각의 부문은 재무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감사의 효율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

업무수행이사는 김 회계사가 문서화한 부문감사인과 관련된 결론을 검토하였다. 김 회계사의 **결론**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이유를 **[답안양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만약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 요청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부문 |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이유 |
| A |  |  |
| B |  |  |
| C |  |  |
| D∼Z |  |  |

**(물음 2)** 김 회계사는 그룹감사목적으로 해외에 소재한 부문감사인에게 부문정보에 대한 감사수행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김 회계사는 부문감사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가적 적격성,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규제환경인지 여부 등을 **이해**하고 그 **결론**을 아래 자료와 같이 문서화하였다.

**<자료>**

|  |
| --- |
| **(부문 A)**  **부문감사인 이해결과**: 부문감사인이 20x2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부문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룹감사인이 부문감사인의 모든 감사조서를 제공받아 검토함.  **(부문 C)**  **부문감사인 이해결과**: 부문감사인은 그룹재무보고체계인 K-IFRS에 대한 이해가 없어, 해당국가의 GAAP에 따른 감사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독립된 감독기관에 의한 감사품질 모니터링이 취약하여 감사인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그룹경영진에게 질문한 결과, 해당 국가의 GAAP과 K-IFRS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은 몇 가지 되지 않고 그룹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함. 이러한 내용을 향후 서면진술에 기재하고, 부문감사인이 해당국가의 GAAP에 의하여 수행한 감사결과를 신뢰하고 그룹감사 목적으로 수정 없이 사용하기로 함. |

업무수행이사는 김 회계사가 문서화한 부문감사인과 관련된 결론을 검토하였다. 김 회계사의 **결론**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이유를 **[답안양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만약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 요청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부문 |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이유 |
| A |  |  |
| C |  |  |

**(물음 3)** 그룹감사인이 부문감사와 관련하여 그룹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이유를 그룹감사인의 감사효익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물음 4)** 부문감사와 관련하여 그룹감사인은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 부문재무정보에 대해 수행할 업무유형의 결정, 부문감사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룹감사인이 부문감사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문서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문제 7】(10점)**

다음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다.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여 각 물음에서 감사인이 발행해야 할 감사보고서를 **[답안양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료>**

|  |
| --- |
| 1)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성기준은 10억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이라고 판단되는 중요성기준은 30억원이다.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왜곡표시가 순자산(net asset)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한다.  2) 감사인이 설정한 수행중요성은 7억원이다.  3)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 질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 --- | --- |
| 물음 | 감사의견 | 강조사항 | 기타사항 | 변형근거 |
|  |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중 선택 | ‘○’또는 ‘X’ | ‘○’또는 ‘X’ |  |

**(물음 1)** X회계법인은 전기부터 A㈜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있으며, A㈜는 전기부터 건물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하지 않고 있다. X회계법인은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만약 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다면 20x1회계연도와 20x2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6억원이 감소되어야 한다.

**(물음 2)** A㈜는 당기에 취득한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표시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만약 경영진이 해당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표시한다면, 단기매매금융자산은 12억원이 감소되어야 한다. 한편, 경쟁기업인 B㈜는 특허권 침해로 A㈜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만약 패소한다면 A㈜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A㈜는 해당 소송사건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다.

**(물음 3)** X회계법인은 A㈜가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A㈜가 조인트벤처에 투자한 지분금액은 A㈜ 순자산의 20%(A㈜의 순자산: 500억원)에 해당한다.

**(물음 4)** A㈜의 당기말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이 10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경영진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만약 경영진이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계상한다면, 기말재고자산은 35억원 만큼 감액되어 순실현가능가치로 계상되어야 한다.

**(물음 5)** X회계법인은 당기부터 A㈜를 감사하고 있다. 전기 재무제표는 Y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전기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다. X회계법인은 Y회계법인에게 전기감사조서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따라서 X회계법인은 기초잔액에 대하여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기초재고자산 4억원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문제 8】(12점)**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계속기업가정을 전제하여 작성한다.

**(물음 1)** 경영진이 판단한 계속기업가정을 감사인이 고려할 때, 핵심적인 부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이다. 경영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때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경영진이 계속기업가정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서술하시오.

**※ 다음은 (물음 2)부터 (물음 4)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

|  |
| --- |
| X회계법인은 대형해운사인 A해운㈜의 20x1년도 재무제표(1.1. ∼ 12.31.)를 감사하고 있다. 최근 무역흐름의 악화로 작년에 중대형 해운업체 38개 중 4개사가 퇴출되고 3개사는 워크아웃되었다. 따라서 감사인은 해운업의 불황으로 계속기업가정의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 A해운㈜의 경영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예비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식별하였다.  A해운㈜는 최근 3년간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x2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확정만기 차입금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A해운㈜는 부도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감사인은 만기도래 예정인 차입금의 상환가능성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감사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경영진에게 질문하였다. |

|  |
| --- |
| 이에 대하여 (2) 경영진은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였다. (3) 경영진이 제시한 자구계획에 따르면, A㈜는 20x2년 3월부터 브라질에 소재한 B정유와 독점적으로 원유 수송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예정대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물음 2)** 밑줄 친 ⑴과 같이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식별한 경우, 감사인이 수행해야할 절차를 서술하시오.

**(물음 3)** 밑줄 친 (2)와 같이 경영진이 자구계획을 제시한 경우, 감사인이 수행해야할 절차를 서술하시오.

**(물음 4)** 밑줄 친 (3)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해당 상황에서 계속기업가정의 사용은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때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감사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서술하시오.

**※ 다음은 (물음 5)부터 (물음 6)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

|  |
| --- |
| 다음은 A해운㈜의 감사절차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X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와 현장책임회계사가 나눈 대화이다.  **업무수행이사**: A해운㈜로부터 서면진술은 입수했나요? 감사조서를 보니 감사대상기간(20x1.1.1. ∼ 20x1.12.31.) 중인 20x1년 5월 1일에 최고경영진이 차○○사장에서 변○○사장으로 변경되었군요.  **현장책임회계사**: 변○○사장은 회계기간 중에 취임했기 때문에 취임 전 기간에 대한 서면진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 감사계약서에도 차○○사장이 서명하지 않았냐며 항변했습니다.  **업무수행이사**: 그래서 서면진술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습니까?  **현장책임회계사**: ⑴로부터 서면진술을 받았습니다. 서면진술일은 ⑵의 일자로 확인받았습니다. |

**(물음 5)** 밑줄 친 ⑴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진술의 요청이 되는 대상자, 대상기간 및 이유를 아래의 **[답안양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대상자 | 대상기간 | 이유 |
|  |  |  |

**(물음 6)** 밑줄 친 ⑵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진술일을 서술하시오.

**【문제 9】(8점)**

후속사건이란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및 감사보고서일 후에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을 말한다.

**※ 다음은 (물음 1)과 (물음 2)에 관한 자료이다. 아래의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다.**

**<자료>**

|  |
| --- |
| X회계법인은 A㈜의 20x1년 재무제표를 감사하였다(감사보고서일: 20x2년 2월 14일). 그러나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20x2년 2월 28일에 알게 되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아직 회사에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

**(물음 1)** 감사인은 아래의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일자를 언제로 기재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단, 감사인은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감사보고서일자를 선택하고자 한다.

|  |
| --- |
| A㈜의 경영진은 해당 후속사건을 재무제표에 수정·반영하고, 관련 주석으로 기술하였다. 해당 후속사건의 영향에 대해서만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재무제표 승인권자가 이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것이 법규나 재무보고체계에서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감사인은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해당 수정사항에만 국한하여 수행하고 20x2년 3월 2일에 감사절차를 종료하였다. |

**(물음 2)** 아래 상황에서 후속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표명해야 할 감사의견과 그 판단근거를 아래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통해 후속사건을 재무제표에 수정·반영할 것을 A㈜의 경영진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영진은 해당 후속사건을 재무제표에 수정·반영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감사인은 해당 후속사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답안양식]**

|  |  |
| --- | --- |
| 감사의견 | 판단근거 |
|  |  |

**(물음 3)** 재발행되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최초 감사보고서와 비교할 때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된다. 감사보고서가 재발행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수정 또는 추가(감사보고서일 제외)되는 부분을 아래의 **<보기>**에서 번호를 선택하고 해당 부분에 기술해야 할 내용을 **[답안양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보기>**

|  |
| --- |
| 1. 도입문단 2.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3. 감사인의 책임 4. 변형근거문단 5. 의견문단 6. 강조사항 또는 기타사항 |

**[답안양식]**

|  |  |
| --- | --- |
| 번호 | 기술해야 할 내용 |
|  |  |

**-끝-**

여 백

여 백